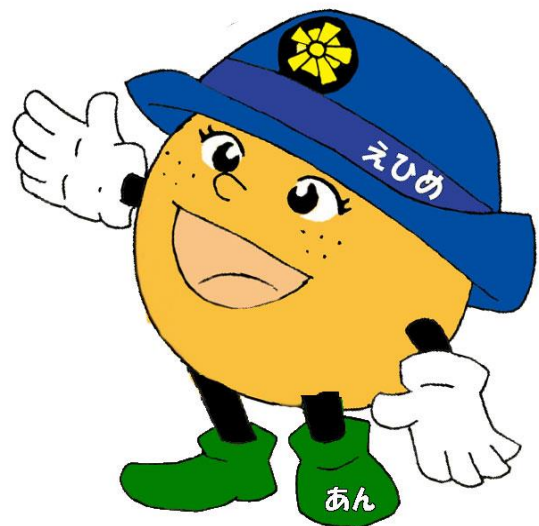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어진 분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의 안내)



에히메현 경찰본부

머리말

교통사고나 뺑소니 피해를 당하는 것은 대단히 괴롭게 슬픈 것입니다.

이 팜플렛은 피해자 및 그 가족분에게

- 경찰의 피해자지원이란 어떤 것인지
- 경찰이 피해자 및 그 가족 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 사고 가해자는 어떤 수속으로 처벌 받게 되는지
- 자동차보험 제도는 어떤 것인지

등을 알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자작성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도이되기를 바랍니다.

~ 목 차 ~

1 경찰의 피해자 지원	1
2 피해자 유족 분들에게 부탁	2
3 형사수속의 개요 ~ 가해자 처벌의 흐름 ~	3
4 검찰청, 법원의 피해자 지원	7
5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요	9
6 에히메현의 피해자지원 상담창구	13
7 기타 지원, 구제제도	14

1 경찰의 피해자 지원

경찰은 어느 정도 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하 피해자로 호칭) 을 경찰직원을 붙여주거나 정보제공, 상담창구 설치등의 지원을 합니다.

① 피해자 지원 전담팀 제도

교통사고 발생 직후로 정신적인 충격으로 불안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사관이 아닌 다른 지정 경찰직원이 피해자와 함께 하면서 각종 상담 접수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 연락제도

피해자는 교통사고 수사 내용, 가해자 체포 여부, 가해자 형사처분 내용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를 담당한 경찰 수사관등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상대방에 관한 것

- 가해자 주소, 성명,나이등
- 교통사고 발생 일시,장소
- 조사상황

◆ 교통사고 상대방의 형사처분에 관한 것

- 가해자 검거상황
- 가해자 처분상황
- 송치 검찰청,기소,불기소등의 처분결과, 기소된 법원

◆ 기타

피해자 중에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잊고 싶으니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은 담당 수사관등에게 그런 뜻을 알려 주십시오.

③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등의 행정처분이 공안위원회에 의해 내려집니다.

행정처분(취소처분과 90 일 이상의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처분을 받는 가해자에 대해 공개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다만 의견청취에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고 가해자도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의견청취 없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도의 후유 장애가 남은 큰부상이었을 경우 행정처분 결과를 문의가 있을 때는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 행정처분 내용

가해자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 내용(면허취소, 효력정지처분및 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④ 경찰 상담 창구

경찰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담에 응하는 등의 지원활동을하고 있습니다.그 창구 소개를 참고해 주십시오.

○ 경찰 종합상담전화(각종경찰상담접수)

◆ 전화 089-931-9110 #9110

○ 교통사고 상담창구

◆ 교통사고피해자 지원상담관(에히메현경찰본부교통지도과)

전화 089-934-0110

◆ 각 경찰교통과

◆ 각도도부현경찰상담창구는

경찰청범죄피해자 지원실홈페이지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

를 참조 바랍니다.

○ 카운셀링에 관한 상담창구

교통사고등으로 큰 정신적인피해를 입은 피해자등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각종상담 카운셀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에히메현 경찰본부총무실홍보현민과 범죄피해자 지원실
전화 089-934-0110

2 피해자 유족 분들에게 부탁

피해자 유족 분들에게는 형사수속을 할 때 필요한 부탁으로 인해 부담을 입힐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범인체포, 재판의 증거수집,범인처벌에 중요한 것뿐입니다. 부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① 사정 청취

피해자나 유족 분들에게서 수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이나 범행차량에 대해 자세하게 묻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등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전후의 행동 등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경찰관이 하는 사정 청취 이외에 검찰관도 사정을 물을 경우도 있습니다.왜 같은 질문을 거듭 받는지를 이상하게 생각되실 지도 모르지만, 검찰관이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② 증거품 제출

사고 당시의 착의,구두,소지품 등을 증거품으로써 제출을 부탁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품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대한 교통사고에서는 사고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또는 뺑소니 사건에서는 도중인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제출해 주신 착의 등을 견분하겠습니다.

※ 증거품으로써 제출을 받은 물건은 수사나 재판의 과정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재판이 끝나지 않아도 돌려드립니다.
(환부라고 말합니다.)

③ 실황검문 입회

피해자나 유족 분들에게서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의 실황검증에 입회를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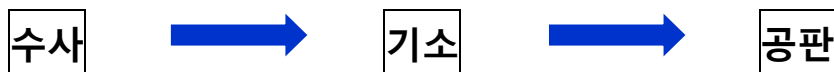
④ 재판소에서의 증언

피해자나 유족 분들에게 범죄를 입증을 위해, 공판에서 증언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증인신문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소에서는 여러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4 검찰청 재판소의 피해자 지원을 참고해 주십시오.

3 형사수속의 개요 ~ 가해자 처벌의 흐름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① 수사

수사란, 증거 수집으로 범인을 특정하여, 사실 관계를 밝혀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수사를 합니다.

◆ 사정 청취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이나 교통사고를 신고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담당 경찰관이 자세하게 묻습니다.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황견문

실황견문이란, 경찰관이

- 교통사고의 현장
-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나 사고차량 등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여 교통사고의 상황이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 사건송치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신병을 구속했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과 함께 검찰관에게 송치합니다. (보도기관은 송검이라고 말합니다.)
- 검찰관은 필요성을 인정했을 경우는 송치되었을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재판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구류를 청구합니다.
- 계속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류하는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임의로 수사를 했을 경우는, 조사 등의 수사를 한 뒤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송치합니다.

② 기소

검찰관은 송치된 증거 등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를 '기소'

◆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를 '불기소'

라고 말합니다.

또, 기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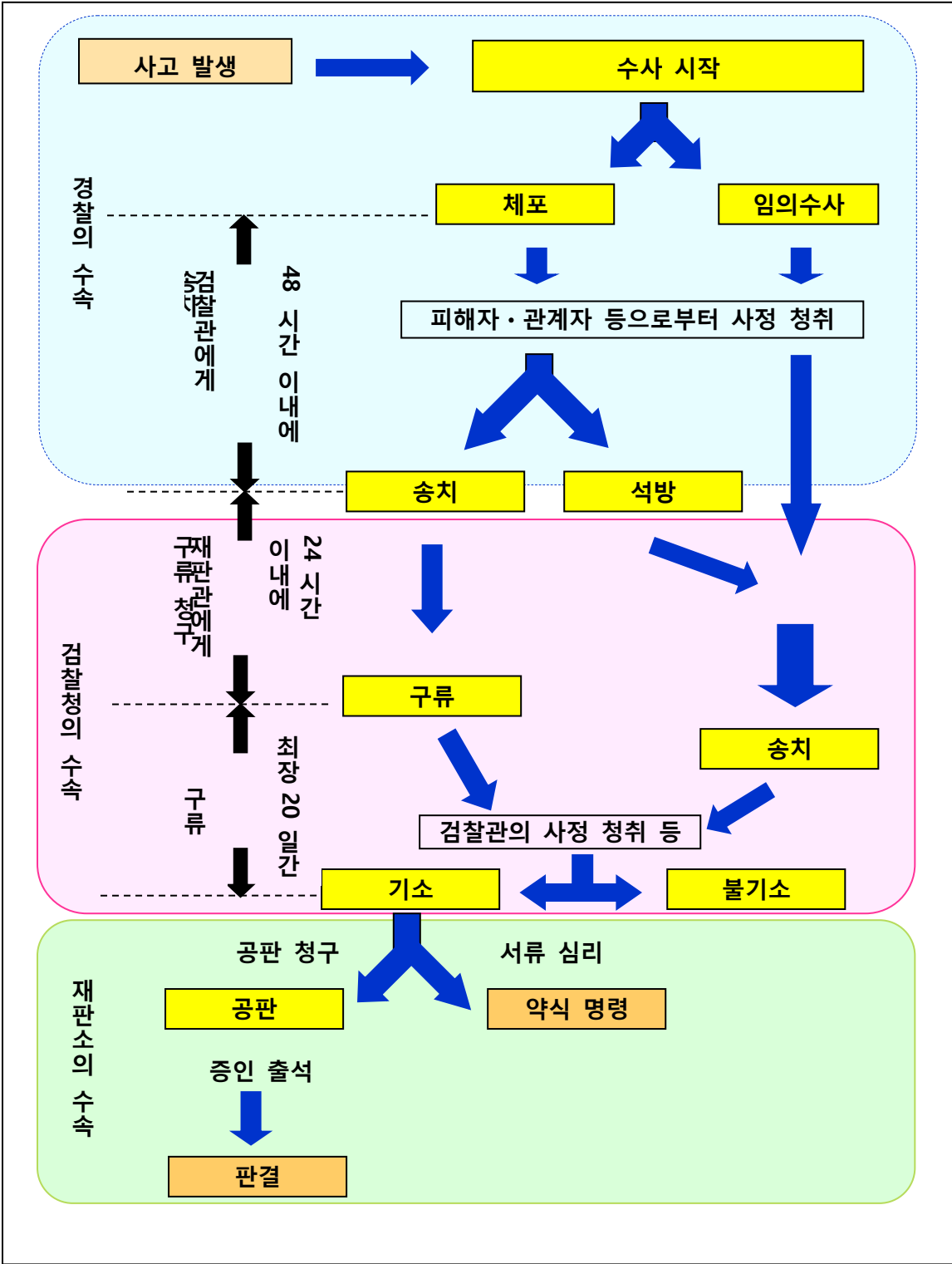
- ◆ 공개 재판을 청구하는 '공판청구'
- ◆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를 명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약식청구' 등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되면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
- ※ 기소, 불기소의 판단시 필요할 경우 검찰관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정을 들을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 ※ 불기소가 되었을 경우는 지방재판소와 주요 지방재판소 지부에 있는 검찰심사회에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공판 등

피의자가 기소되어, 공판이 열리는 날이 결정하여, 그후 공판에 따라 심리가 행해지어, 판결이 내립니다.

판결에 대해 검찰관이나 피고인이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의 재판소 (고등재판소등)에 호소하게 됩니다.

형사 수속의 흐름도



※ 범인이 소년(20 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심판 수속 등에 의한 경우가 있어 이 수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검찰청, 법원의 피해자 지원

① 검찰청의 피해자 지원

피해자등의 부담이나 불안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원이 전국 검찰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원은 피해자의 각종 상담에 대한 대응,법정으로 안내도하고 불안을 덜기 위해 함께 함, 사건기록 열람,증거품 반환등의 수속절차를 돕고 피해자에 따라 정신면,생활면,경제면등의 지원을 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등을 소개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② 검찰청 피해자 통지제도등

검찰청에 송치된 사건 피해자, 그 친척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분들,약혼자등 친척에 준하는 분등이 검찰청에 통지를 희망하시면

- ◆ 사건처분결과(기소,불기소등)
- ◆ 재판이 행해지는 재판소 재판일
- ◆ 재판결과
- ◆ 범인 신병 상황,기소사실,불기소이유개요
- ◆ 범인의 구치소 출소정보등이 통지됩니다.

또 특별히 재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범인 석방직전에 석방예정시기등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사건 성질상 통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검찰관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통지를 희망해도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형사재판시 증인의 정신적인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피해자 분등에게는 피해상황이나 피고인에 대한 심경을 목격자 분등에게는 사고 목격상황등을 법원에서 증언 하셔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 법원이 인정하는 적당한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 피고인이나 방청인으로부터 보이지 않도록 차단물등을 설치할 것
- ◆ 별실에서 TV모니터를 통해 증언 할 것

④ 기타, 형사재판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 제1회공판기일 후,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는 형사사건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할 수 있다.
- ◆ 피해에 대한 심경이나 의견을 말 할 수 있다
- ◆ 피해자들이 청구할 경우,공판을 우선적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배려 받을 수 있다
- ◆ 피고인과 합의했을 경우,별도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돼도록 합의 내용을 형사재판 조서에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 ◆ 검찰청으로부터 모두진술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받을 수 있다
- ◆ 피해자 참가제도

위험운전치사상해죄,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해죄등의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참가인이라는 소송수속상의 지위를 얻은 후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일정한 요건 아래서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해 질문하거나, 사실 또는 법률 적용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

피해자 참가인이 된 피해자들은 공판기일에 출석이나 피고인질문등을 변호사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그 재력이 없을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변호인의 보수및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 ◆ 손해배상명령제도

위험운전치사상해죄등의 고의로 인한 범죄 행위로 사람을 사망
상해하게 한 죄등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에 덧붙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재판수속특례로 분쟁을 형사수속 성과를 이용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⑤ 소년심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 심판개시 결정 후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는 소년사건에 관한 기록(소년관계자의 프라이버시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제외)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 ◆ 가정법원에 범죄피해에 대한 심경이나 의견을 말 할 수 있다.
-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년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방청을 희망할 때는 가능한한 빨리 가정법원에 신청하십시오.
- ◆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기일,심판상황에 대해 설명을 받을 수 있다.
- ◆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 심판결과등의 통지를 받을 수 있다.

⑥ 검찰청 상담창구

피해자가 검찰청에 직접 피해상황이나 사건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피해자 핫라인」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 핫라인」은 전화이외에 팩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응답전화나 팩스로 문의,상담할 수 있다.

- ◆ 마쓰야마 지방 검찰청 피해자 핫라인

TEL 089-935-6607

- ◆ 전국 지방 검찰청 피해자 핫라인

http://www.moj.go.jp/keiji1/keiji_keiji11-9.html

5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자동차보험에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이 있다.

- ◆ 책임보험이란 교통사고 때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1대당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 ◆ 임의 보험이란 책임보험으로 다 책임 질 수 없는 손해배상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하며,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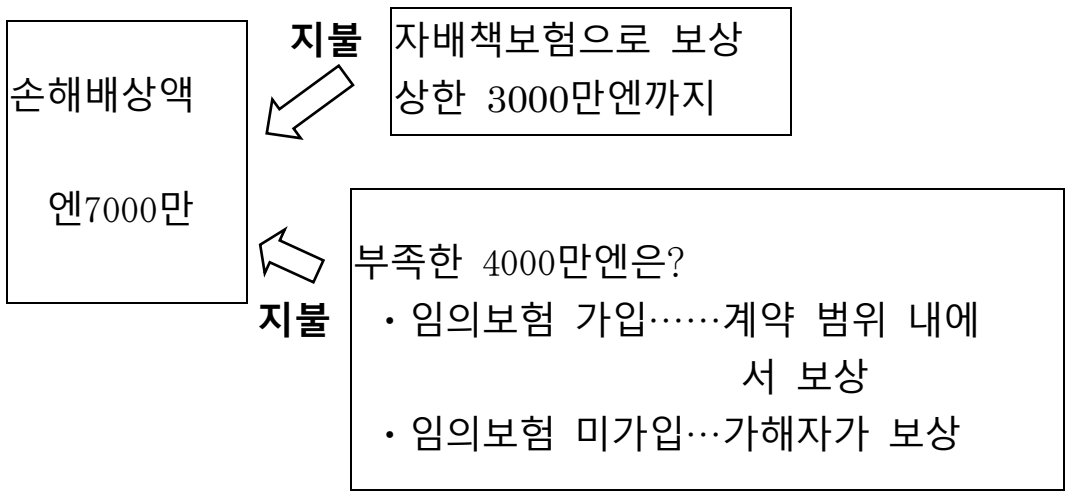


자배책보험			임의보험						
가입해야 함 (의무)		가입	임의						
인신 손해만		대상	인신 손해와 대물 손해						
<table border="1"> <tr> <td>사망</td> <td>3000만엔</td> </tr> <tr> <td>상해</td> <td>120만엔</td> </tr> <tr> <td>후유 상해</td> <td>75만~4000만엔 (1~14의 장애 등급에 따름)</td> </tr> </table>		사망	3000만엔	상해	120만엔	후유 상해	75만~4000만엔 (1~14의 장애 등급에 따름)	지불 한도액	보험계약의 한도액까지 보상
사망	3000만엔								
상해	120만엔								
후유 상해	75만~4000만엔 (1~14의 장애 등급에 따름)								

인신손해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나 보상 한도액을 넘을 경우 그 초월한 부분을 임의 보험이 배상한다.

예를들면, 사망사고로 손해배상액이 7000만엔인 경우, 책임보험이 3000만엔 나머지4000만엔을 가해자가 가입한 임의보험 또는 인신상해보험이 전액 혹은 일부를 충당한다.

보상액이 손해배사액에 미치지 못 할 때나 관계자가 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가해자가 직접 배상하게 된다.



○ 책임보험

1 책임보험 청구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교통사고 증명서,진단서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손해배상액 지불을 청구한다.

(1) 피해자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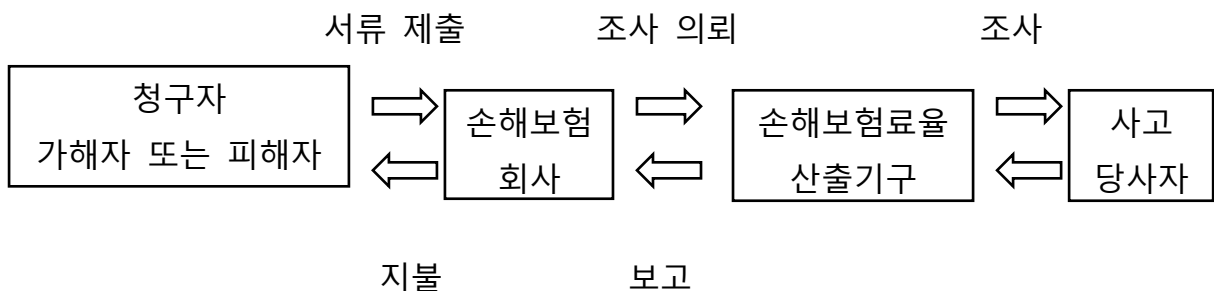
피해자가 직접 사고를 낸 차에 대해 계약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해자 청구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운전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총 손해액의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비 등을 지불했을 때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했을 때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몇 번이라도 손해보험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 절차



2 임시 지급금제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생활이 어려워 지지 않도록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장 필요한 출비에 충당하기 위해 임시 지급금을 손해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손해보험회사에 문의하십시오.

3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청구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해	치료를 마친 날	사고 발생부터 3년 이내
후유장해	장해판정일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사망	사망일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상고정일이란 증상이 안정되고 의학상 일반적인 치료를 해도 그 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를 말하며 의사가 판단한다.

◆ 임의보험(공제)

보험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각자가 가입한 손해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②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다음과 같은 인신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 뺑소니사고로 상대방을 알 수 없을 때.
- ◆ 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 미가입시.
- ◆ 사고 가해자의 차가 도난차로 책임보험을 쓸 수 없을 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이런 경우에 정부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하고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③ 기타 배상청구

자동차 인신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 본인 이외에도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재

산전손해, 정신전 손해등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6 에히메현의 피해자지원 상담창구

경찰이외 관공서나 공적인 기관, 기타 각종 기관등에서도 다음과 같은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카운세링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상담 창구

명 칭	내 용
교통사고 상담소	<p>◆ 에히메현의 상담창구 현청에서 “에히메현 교통사고 상담소” 를 개설하고있습니다. 상담일시 현청의 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오후 4시 전화 089-941-2111 (내선 5586) 변호사도 원칙적으로 제1, 제3 금요일 오후1시~오후3시에 하고있습니다(사전예약이 필요).</p>
일본 변호사 연합회 교통사고 상담센터 에히메현 지부	<p>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 및 보험금 지불에 대한 트러블에 관한 법률상담, 손해배상의 협상에 관한 합의 알선, 뇌손상에 따른 고차뇌기능장애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오후 4시(예약필요) 전화 089-941-6279</p>
일본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	<p>◆ 손뽀 ADR센터 자배책보험, 자동차보험에 관한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 0570-022808 상담일시 월요일~금요일 (축일·휴일 및 12/30~1/4를 제외함) 오전 9시15분~오후5시</p>
J A 그룹 교통사고 상담소	<p>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에히메현 본부에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089-948-5551</p>

손해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상담소	각손해보험회사본,지점 영업소 상담가능.
피해자 지원 센터 에히메	피해자 서포트를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 상담일시 매주 화~토요일 오전10시~오전 4시 단 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함 전화 089-905-0150
교통사고 분쟁 처리 센터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호간의 화해 알선이나 법률상담을 위촉한 변호사가 행함. 전화 087-822-5005

※ 상세한 것은 관계기관에 문의 바람.

7 기타 지원, 구제제도

교통사고 피해자등에 대한 원조및 구제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각종 원조 기관이 실시하는 원조·구제 제도

명 칭	내 용
일본사법지원센터 범죄 피해자 지원 전화 ☎0120-079-714 호 테라스 에히메 ☎050-3383-5580	피해자 지원에 익숙한 변호사나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등에 관한 정보를 무료제공, 재력이 없을 경우 무료법률상담및 재판대리비용,서류작성비용 등을 입체. 또 일본변호사연합회로부터 위탁 받아 일정범죄 피해자에 대해 인권구제 관점에서 변호사 비용을 원조.

<p>자동차사고대책기구 에히메현 지소 ☎089-960-0102</p> <p>교통사고피해자찾라 인 ☎0570-000738 평일 9:00~15:00</p>	<p>중학교졸업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아나 중도후유장해자 자녀에 대한 생활자금 대여등 다음과 같은피해자 원조사업을 한다.</p> <p>① 교통사고로 인해 상시, 수시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중도후유장해가남은 분에게 간호료지급.</p> <p>② 교통사고로 인해 중도후유장해자가 병원 복지 시설에 단기 입원 입소하는 비용 조성.</p> <p>③ 교통사고로 인해 만성의식장해자의 치료및 양호를 위한 요양시설 설치,운영.</p> <p>④ 교통사고로 인한 고아나 중도후유장해자 자녀에 대한 생활자금 대여.</p> <p>⑤ 간호에 대한 상담및 교통사고로 인한 고아의 생활 상담등의 접수.</p> <p>⑥ 같은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마음의 교류를 위해 동우회등의 활동 실시.</p>
<p>교통유아 육성기금 ☎0120-16-3611 평일 9:00~15:00</p>	<p>교통사고로 아버지(어머니)를 여인 13세 미만의 교통유아가,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금 중에서 거출금을 불입하여 '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에 가입하면, 이에 중앙정부와 민간협력단체가 부담하는 원조금을 합쳐서 운용하여, 교통유아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육성 급부금으로서 연 4회(3, 6, 9, 12월)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가입 상담 등은 기금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p>
<p>도로후생회 ☎03-6674-1761 평일 9:00~15:00</p>	<p>동일본,중일본,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의 유아이고 경제적으로 취학이 어려운 고동학생등 대해 취학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p>

※ 자세한 것은 관계 기관 등에 문의하십시오.

2 세법 상의 구제 제도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부상을 입어 의료비를 지불하거나, 신체에 장

해를 입으신 분, 혹은 배우자와 사별한 분들에게는 소득세가 감액되는 “소득공제”가 인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명 칭	내 용
의료비 공제	지불한 의료비(그 의료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불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함)의 금액(일정액을 넘는 부분에 한함)이 공제되는 것.
장해인 공제	장애인에게 27만엔(중도의 장애가 있을 경우는 40만엔. 이하 동일), 부양친족 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1명에 대해 27만엔이 공제되는 것.
과부(홀아비) 공제	남편과 사별한 아내 또는 아내와 사별한 일정한 남편에게 원칙적으로 27만엔의 공제액이 인정되는 것.

※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십시오.

3 복지 제도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모자가정이 되었을 경우에, 아동 부양 수당 및 모자복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있습니다.

또, 수입이 없어지거나 적어져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구 : 시의 창구 . . . 각시의 복지사무소

정의 창구 . . . 에히메현 지방국의 지역복지과

【담당경찰관】

걱정되는일, 이해가 안 되는 일등 요망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상담
해 주십시오.

에히메현

경찰서

과

계

이름

(내선)
